



TM

산림인증

KFCC/00-001

한국산림인증제도 단체산림경영인증 가이드

한국산림인증위원회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 02-6393-2744

팩스 : 02-6393-2718

홈페이지 : <https://kfcc.kofpi.or.kr>

문 서 명 : 한국산림인증제도 단체산림경영인증 가이드

문서번호 : KFCC-A-01

승 인 :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승 인 일 : 2025. 05. 21.

시 행 일 : 2025. 05. 21.

검 토 일 : 2030. 04. 20.

연 락 처 : kfcc@kofpi.or.kr

목 차

1. 적용범위	4
2. 인용표준	4
3. 용어정의	4
4. 단체 조직(organisation)의 상황	7
5. 리더십	9
6. 기획	12
7. 지원	12
8. 운용	13
9. 성과평가	14
10. 개선	18
참고문헌	20

한국산림인증제도 단체산림경영인증 가이드

제 정	2015. 12. 22.
개 정	2017. 12. 22.
개 정	2021. 12. 21.
개 정	2025. 05. 21.

1.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단체 산림경영을 포함한 하나의 인증서에서 다수의 산림 소유자/경영자들의 인증을 인정하는 산림인증제도의 일반적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

단체산림경영인증은 개인 산림 소유자/경영자들을 포함하여 특정 경영구조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이 조직(Entity)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표준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고, 샘플링 기반의 인증 활동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 내 개별 소유자 및 경영자를 대표한다.

이 문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은 단체산림인증에 대한 PEFC ST 1002:2018를 반영하며 해당 표준은 단체인증을 신청하는 단체 조직(organisations)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2. 인용표준

PEFC ST 1002:2018, *Group Forest Management - Requirements*

3. 용어정의

이 문서의 목적을 위해 ISO/IEC 지침 2에 제공된 용어 및 정의는 다음의 정의와 함께 적용됩니다.

3.1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단체 조직(organisation)의 활동으로 인해 생활 및/또는 업무환경에 직접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비고 1: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는 이웃 공동체, 근로자 등이 포함되나 표준과 관련된 주제(예: NGO, 과학계, 시민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영향을 받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비고 2: 표준의 사용자일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인증 받은 조직(entity)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산림경영인증표준의 경우 산림 관리자,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 인증표준인 경우 목재 가공업체

3.2 심사

특정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범위/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 및 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화되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

3.3 인증 면적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시스템이 적용되는 산림 면적. 단체 인증에서의 인증 면적은 참여자의 산림 면적과 단체 산림경영 인증서에 포함된 산림 면적의 합계이다.

3.4 문서화된 정보

그 출처나 형태 및 매체에 상관없이 조직(organisation)이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정보

3.5 단체산림인증 참여 확인서

단체산림인증서에 포함된 참여자에게 발행되며, 참여자가 해당 단체산림인증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해 주는 문서

3.6 산림 소유자/경영자

명확하게 정의된 인증지역에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법적 권리 또는 점유권을 가지거나 전통적 또는 관습적인 점유권 및 산림경영인증 표준(KFCC-S-01)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적 조직(entity)

3.7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

인증지역에서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및 기타 산림인증시스템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산림경영의 적합성을 보장할 전반적 책임을 가지고 참여자를 대표하는 법적 조직(entity)

비고: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의 구조는 단체 조직(organisation)에 대한 운영, 참여자 수, 그 외 기본적인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만, 1인도 법적 조직(entity)을 대표해도 된다.

3.8 단체산림인증서

단체 조직(organisation)이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및 기타 산림인증시스템의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

3.9 단체산림인증

하나의 단체산림인증서를 통해 단체 조직(organisation)을 인증하는 것

3.10 단체경영계획

목표, 행동 및 관리 방식을 기술한 문서화된 정보. 단체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단체경영시스템 및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요구사항의 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3.11 단체경영시스템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의 목적과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organisation)의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3.12 단체 조직(organisation)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및 인증 이행을 위한,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에 의해 대표되는 참여자 단체. 참여자와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 간 구속력 있는 문서화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단체가 지역 경계 또는 관련 산림인증제도에 의해 선택된 다른 용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단체 조직(organisation)”이라는 용어는 “지역 조직(organisation)”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3.13 내부 심사

기록 및 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특정 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

적이며 문서화된 절차로 단체 조직(organisation) 자체(당사자 자체 심사)에서 수행된다.

3.14 모니터링

시스템, 절차 또는 활동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3.15 조직(organisation)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권한 및 관계를 갖고 자체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3.16 참여자

인증 면적 내에서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요구사항을 이행할 능력을 갖춘 단체산림인증서에 포함된 산림소유자/경영자

비고: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을 이행할 능력”은 조직(entity)이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법적 권리, 소유권 또는 전통적·관습적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일회성(일시적) 계약자에게는 단체산림경영인증 참여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특정 산림지역에 대해 장기적 경영권을 가지지 않은 계약자가 단체산림경영인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지역 또는 국가 시스템에서는 해당 계약자가 장기적 법적 권리 또는 점유권을 가진 참여자 또는 개별적으로 인증 받은 산림소유자/경영자의 인증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material)에 대해서만 인증비율표시(claim)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17 방침

경영자/소유자 또는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조직(organisation)의 목적 및 방향

3.18 이해관계자

표준 요구사항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 또는 조직(organisation)

4. 단체 조직(organisation)의 상황

4.1 단체 조직(organisation)과 조직 상황의 이해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역량을 가진 산업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다.

단체의 목표와 지속가능한 산업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이슈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외부 이슈: 시장 환경, 법규 및 규제, 환경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

b) 내부 이슈: 조직 구조, 자원, 재정적 역량, 이해관계자 참여

이러한 이슈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책 분석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단체 조직의 관리 및 의사결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4.2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이해

4.2.1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a) 단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

b)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

4.3 단체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4.3.1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3장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는 다음 용어와 관련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a) 단체 조직(organisation) 및 단체 조직(organisation)의 요소(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 및 참여자)

b) 인증 면적

c) 단체산업경영 인증서

d) 단체 인증 참여를 확인하는 문서

4.3.2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단체경영시스템의 범위 설정을 위하여 단체경영시스템의 경계 및 적용 가능성을 결정해야 한다.

4.3.3 단체 조직은 산업경영인증표준의 요구사항 중 단체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항목을 결정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최소한 6.3, 7.2, 7.3,

7.4, 9는 단체 수준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4.3.4 시스템의 범위는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4.4 단체경영시스템

4.4.1 모든 참여자는 내부 모니터링과 내부 심사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4.2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이 단체인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산림기반 재료(material)를 거래하는 경우, 인증된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 (CoC)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5. 리더십

5.1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1.1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의 기능 및 책임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은 다음의 기능 및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a) 단체의 모든 참여자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 및 유지
- b) 인증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 인증신청, 인증기관과의 계약관계 등 인증 과정에서 단체 조직(organisation)을 대표
- c) 단체 조직(organisation)의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 d) 단체 조직(organisation)에 새로운 참여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문서화된 참여 승인 절차 수립. 이러한 승인 절차에는 최소한 신청자의 연락처 정보 확인, 산림자산 및 규모에 대한 명확한 식별을 포함.
- e) 부적합 사항을 시정/종결하지 않은 참여자의 참여 중지 및 제외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 수립. 부적합으로 인해 단체인증범위에서 제외된 단체 참여자는 제외 후 12개월 내에 재참여할 수 없음
- f) 다음 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 보관:
 - i.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및 기타 산림인증시스템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른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 및 참여자의 적합성
 - ii. 참여자의 계약 세부사항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산림 자산과 그 규모

iii. 인증 면적

iv.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행 및 검토, 그리고 취해진 시정 및 예방 조치

- g)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을 준수하겠다는 참여자의 의지가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서화된 합의에 기반하여 모든 참여자와의 관계를 구축.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은 시정 또는 예방 조치를 시행 및 집행할 권리와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에 대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인증 범위에서 해당 참여자를 제외할 수 있는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의 권리를 포함하는 문서화된 합의 또는 기타 서면 계약을 모든 참여자와 체결해야 함.

비고: “참여자의 의지” 및 모든 참여자와의 “서면 계약 또는 문서화된 합의”에 대한 요구사항은 산림 소유자/경영자 협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프로그램 및 세금 관련 사항 제출 등과 같은 기준에 존재하는 조직(organisation)·단체·구성원의 협약 및 서면 동의 또는 참여를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조직(organisation)이 참여자를 대표하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약속 및 계약 조건을 집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 h) 모든 참여자에게 단체산림인증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공
- i) 모든 참여자에게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및 기타 산림인증시스템 관련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이행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지침을 제공
- j) 특정 단체인증 외의 한국산림인증에 따라 식별된 단체 구성원으로부터 보고된 부적합 사항을 해결하고, 모든 단체 구성원의 이행을 보장
- k) 참여자가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 l) 단체 구성원 및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내부 심사 프로그램 운영
- m) 단체산림인증에 대한 경영 검토를 실시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 실시
- n) 관련 데이터, 문서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인증기관, 인정기관, PEFC 위원회 또는 국가산림인증시스템 운영기관(NGBs)의 모든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완전한 협력 및 지원 제공; 공식적인 심사 혹은 검토와 관련되거나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것에 관계없이 단체 조직(organisation) 및 기타 시설에 포함되는 산림 지역에 대한 접근 허용

5.1.2 참여자의 기능 및 책임

다음 사항에 대한 참여자의 기능 및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 a)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및 기타 산림 인증시스템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서화된 합의를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에 제공. 단체 인증에서 제외된 단체 참여자는 제외 후 12개월 내에 재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

비고: “문서화된 합의” 및 참여자의 “의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산림 소유자/경영자 협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프로그램 및 세금 관련 사항 제출 등과 같은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organisation)·단체·구성원의 협약 및 서면 동의 또는 참여를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조직(organisation)이 참여자를 대표하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약속 및 계약 조건을 집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 b)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에 이전 단체 참여에 대한 정보 제공
- c)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및 기타 인증시스템의 관련 요구사항과 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준수
- d)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 또는 인증기관이 관련 데이터,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 공식심사·검토·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산림 또는 기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e) 특정 단체 인증 이외의 한국산림인증 하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에 알림
- f)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가 수립한 관련 시정 및 예방 조치의 실행

5.2 의지 및 방침

5.2.1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 a)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및 기타 인증시스템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
- b) 단체경영시스템에 단체인증 요구사항을 적용
- c) 단체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 d) 참여자의 토지/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

5.2.2 단체경영방침은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의 의지표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화된 정보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해야 한다.

5.2.3 참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 a) 경영시스템의 규칙을 준수
- b) 자신이 운영하는 산림지역에서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의 요구사항을 이행

6. 기획

6.1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단체경영시스템의 변경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단체경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6.2 단체 조직(organisation)이 단체 수준에서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은 단체경영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7. 지원

7.1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단체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7.2 단체경영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KFCC-S-01(산림경영인증표준)은 '7. 지원'에 정의된 사항(지속가능한 산림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최신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지역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7.3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의사소통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a) 단체경영방침
- b)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의 요구사항
- c) 향상된 단체 활동의 이점을 포함한 단체경영시스템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효과성에 기여

d) 단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 미준수에 따른 영향

7.4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단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 의사소통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무엇을 소통할 것인지
- b) 언제 소통할 것인지
- c) 누구와 소통할 것인지
- d)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7.5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단체경영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운영과 관련된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7.6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단체경영시스템 및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준수와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 a) 최신 상태로 유지
- b) 필요한 경우,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
- c) 기밀정보 유출, 부적절한 사용, 문서 손실에 대해 보호된 상태로 유지

8. 운용

8.1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다음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 및 관리해야 한다.

- a) 단체산림인증가이드 및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 요구사항 충족
- b) 6항(기획)에서 결정된 조치 실행

8.2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다음 사항을 계획하고 실행 및 관리해야 한다.

- a)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운영기준을 수립
- b) 운영기준에 따라 프로세스를 실행
- c) 프로세스가 계획대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 보관

9. 성과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9.1.1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지속적인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 조직(organisation)이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a) 모니터링 및 측정대상
- b)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방법(해당되는 경우)
- c) 모니터링 및 측정 수행 시기
- d)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기
- e) 결과의 증거로 제공될 문서화된 정보

9.1.2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은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의 이행과 관련된 단체경영 성과 및 단체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9.2 내부 심사

9.2.1 목표

9.2.1.1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매년 내부 심사를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단체경영시스템의 다음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 i. 단체경영시스템에 대한 단체 조직(organisation) 자체의 요구사항
 - ii. 단체산림경영인증 가이드의 요구사항
- b) 참여자들이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장
- c) 단체경영시스템의 효과적 이행 및 유지

9.2.1.2 내부 심사 프로그램은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 및 모든 단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단체 대표 법적 조직(entity)은 매년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참여자는 샘플링 기반으로 선택될 수 있다.

9.2.2 조직(organisation)

내부 심사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관련 프로세스의 중요성과 이전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 프로그램의 빈도, 방법, 책임, 계획 요구사항 및 보고를 포함한 심사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 이행, 유지
- b) 심사 기준 및 각 심사의 범위 정의
- c) 내부 심사원의 적격성(예: 산립 지식, 표준 지식)
- d) 심사 프로세스의 객관성·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자 선정 및 심사 수
- e) 심사 결과가 관련 경영자에게 보고되도록 보장
- f) 심사 프로그램 이행과 심사 결과의 증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관

9.3 내부 심사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9.3.1 일반 사항

9.3.1.1 단체 조직은 내부 심사 프로그램의 참여자 선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샘플 크기 결정 (9.3.2)
- b) 샘플 범주 결정 (9.3.3)
- c) 해당 범주에 대한 샘플 분포 (9.3.4)
- d) 참여자 선정 (9.3.5)

9.3.1.2 단체 조직은 참여자가 산립소유자/경영자협회 등과 같은 기존 단체 또는 협회에 소속된 경우, 위 9.3.1.1에서 규정한 요건 외에 기존 단체 또는 협회의 관리 및 시행 체계를 고려하여 추가 요구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내부 심사를 위한 샘플 크기는 일반적으로 참여자 수의 제곱근 값의 0.7배로 한다. ($y = \sqrt{x} \times 0.7$)

9.3.2 샘플 크기 결정

9.3.2.1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참여자에 대한 샘플 크기를 산정하여야 한다.

9.3.2.2 샘플 크기는 일반적으로 참여자 수의 제곱근으로 한다: 정수로 반올림

$$(y = \sqrt{x})$$

9.3.2.3 다음 지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고려하여 샘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a)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수준이 중간인 경우, 샘플 크기는 9.3.2.2에서 규정한 대로 참여자 수의 제곱근($y = \sqrt{x}$)이어야 하며, 리스크 수준이 높을 경우 제곱근 값의 1.5배, 리스크 수준이 낮을 경우 제곱근 값의 0.7배를 적용한다.
- b) 내부 심사 또는 이전 인증 심사 결과
- c)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품질/신뢰 수준
- d) 명시된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

비고: 이러한 기술의 예로 위성 데이터 또는 드론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표준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리스크 기반 샘플링을 지원 할 수 있다.

- e) 현장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수단

비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현장 활동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9.3.3 샘플 범주 결정

9.3.3.1 샘플 범주는 리스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해야 하며, 리스크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표준의 지리적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비포괄적(non-exhaustive) 위험 평가 지표 목록이며, 한국의 산림 관리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리스크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수준에 따라 샘플 범주는 조정되며, 세부 적용 기준은 9.3.3.2 및 9.3.2.3 a)를 따른다. 또한, 단체조직은 리스크 평가 및 적용 절차를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 a) 소유형태 (예: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b) 경영 단위 크기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 c) 생물지리학적 지역 (예: 저지대, 저산맥, 고산맥)
- d) 잠재적 단체 참여자의 운영, 프로세스 및 제품

- e) 산림 벌채 및 산림 전용
- f) 윤벌기
- g) 생물다양성의 풍부도
- h) 산림의 휴양(레크레이션) 및 기타 사회 경제적 기능
- i)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의존도 및 이들과의 상호작용
- j) 행정, 운영, 훈련 및 연구에 사용 가능한 자원
- k) 거버넌스 및 법 집행

비고: 사후관리심사 및 갱신심사 시 샘플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a) 현장 생산 공정의 중대한 변화
- (b) 인증 지역의 변경
- (c) 지리적 분포

9.3.3.2 리스크 평가를 통해 리스크 수준은 낮음, 중간, 높음의 세 수준으로 구분되며, 각 리스크 수준에 따라 샘플링 범위나 빈도가 조정될 수 있다(9.3.2.3 a) 참조). 단체 조직지표는 산림 위치의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과 단체 조직의 관리 및 시행 체계를 분류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리스크 수준(고/중/저 위험)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고위험: 불법 벌채가 빈번한 지역, 산림 전용 위험이 높은 지역
- b) 중위험: 법적 보호구역 인접 지역, 산림 관리 제도가 있지만 이행수준이 낮은 지역
- c) 저위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가 확립된 지역

9.3.4 샘플 분포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범주별 샘플을 분배하여야 한다.

9.3.5 참여자 선정

9.3.5.1 최소 샘플의 25%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9.3.5.2 참여자 선정을 위한 리스크 기반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9.4 경영 검토

9.4.1 연례 경영 검토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이전 경영 검토 후 조치 상황
- b) 단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화
- c)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 내부 심사, 인증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를 포함한 산림경영인증표준(KFCC-S-01)의 준수 여부
- d) 다음 사항 추이를 포함한 단체의 성과 정보
 - i. 부적합 및 시정조치
 - ii.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 iii. 심사 결과
- e) 지속적 개선의 기회

9.4.2 경영 검토 결과물에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 단체경영시스템 변경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4.3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경영 검토 결과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1.1 부적합 발생 시 단체 조직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a) 부적합에 대응하고, 가능한 경우 아래의 조치 시행
 - i. 부적합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 시행
 - ii. 초래된 결과 처리
- b)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의 필요 여부를 다음과 같이 평가

i. 부적합에 대한 검토

ii. 부적합의 원인 파악

iii.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하는지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규명

c) 필요한 조치 실행

d)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e) 필요한 경우, 단체경영시스템 수정

10.1.2 단체 조직(organisation)은 증거로 아래와 같은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a) 부적합의 성격/유형 및 취해진 후속 조치

b) 시정조치 결과

10.1.3 단체인증에서 제외된 참여자는 단체 인증에 재참여하기 전 단체 조직으로부터 내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외된 참여자는 제외된 후 12개월 내에는 내부 심사를 받을 수 없다.

10.2 지속적 개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단체경영시스템의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IAF MD 1, *Mandatory Document for the Certification of Multiple Sites Based on Sampling (IAF MD 1)*

ISO/IEC 17000,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ISO/IEC Directives, Part 1 – *Consolidated ISO Supplement – Procedures specific to ISO, Eighth edition, 2017*